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급보장·크레딧 확대·소득활동 감액 폐지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9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8호)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52호)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3호)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6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3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5호)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4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9호)	1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8호)	2
3.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52호)	4
4.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13호)	6
5.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6호)	7
6.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3호)	8
7.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5호)	9
8.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2호)	11
II. 주요 내용별 검토	13
1.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5
다. 관계 기관 의견	18

2. 크레딧 제도 확대	19
가. 개정안의 내용	19
나. 검토의견	29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29
(2)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관련	32
(3) 대체복무에 대한 군복무크레딧 적용 관련	34
(4)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관련	37
(5)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의 적용 시점 조정 관련 ...	38
(6) 출산크레딧 및 실업크레딧의 비용 부담 주체 관련	41
다. 관계 기관 의견	44
3.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감액 완화 또는 폐지	46
가. 개정안의 내용	46
나. 검토의견	49
다. 관계 기관 의견	53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18.
- (3) 회 부 일 : 2024. 6.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25인
- (2) 제 안 일 : 2024. 6. 21.
- (3) 회 부 일 : 2024. 6. 24.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3조의2).

3.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26.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4.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5.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27.
-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6.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7.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8.
- (3) 회 부 일 : 2024. 7. 9.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등을 위하여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함.

그런데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한이 있음에 따라 크레딧의 효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기간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산입기간을 부여하며,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도 앞당기는 등 크레딧제도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다.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8.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18.
-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

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각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소병훈의원안 및 한정애의원안은 각각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되, 한정애의원안은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 서영석의원안 및 이수진의의원안은 국민연금 재정으로 국민연금급여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현 행	소병훈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연 금급여 지급 액을 국민연 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연 금급여 지급 액을 국민연 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u>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나. 검토의견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직역연금에 대하여는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 또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공무원연금·군인연금) 부담할 수 있도록(사학연금)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¹⁾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²⁾

- 이에 각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률에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국가

1)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지급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 국가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남인순의원과 김선민의원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호 및 제33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제3조의2(국가의 책무)가 신설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국가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될 경우 현재 국가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산정·계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바로 확정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이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의견이 제시되었고,³⁾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되었음.

3)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8637호) 체계자구심사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의견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92.1%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연금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등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연금개혁을 위한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지급보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감당하여야 할 조세 및 연금보험료율 부담이 증가하여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바,
-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은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 기획재정부는 수익자가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가능성, 해외사례 부재 및 성실 납부의사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크레딧 제도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각 개정안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상 수준을 높이며, 크레딧 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는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고(서영석의원안·김선민의원안·이수진의원안),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인상하며(김선민의원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으로서 복무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인정하려는 것임(김선민의원안·이수진의원안).
 -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것임(서영석의원안·김선민의원안·이수진의원안).
 - 실업크레딧에 대해서는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상향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서영석의원안·이수진의원안).

< 개정안의 주요 내용(크레딧 관련) >

구분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군복무 크레딧	적용 시점	연금수급시	군복무 완료시	군복무 완료시	군복무 완료시	-
	인정 기간	6개월	복무기간 전체	복무기간 전체	복무기간 전체	복무기간 전체
	기준 소득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0%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0%	-	-
	대체 복무 인정	대체복무 불인정	-	대체복무 인정	대체복무 인정	-
출산 크레딧	적용 시점	연금수급시	출산시	출산시	출산시	-
	인정 기간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	첫째 자녀부터 24개월 이상 (대통령령 위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첫째 자녀부터 24개월	-
	인정 상한	50개월 상한	상한 폐지	상한 폐지	상한 폐지	-
	비용 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	전부를 국가가 부담	전부를 국가가 부담	전부를 국가가 부담	-
실업 크레딧	인정 상한	1년	2년	-	2년	-
	비용 부담	자부담,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분담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분담 ※ 저소득자 일반회계 전액부담	-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분담 ※ 저소득자 일반회계 전액부담	-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전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후단 신설></u>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u>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u><단서 삭제></u>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u>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u><단서 삭제></u>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u>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u><단서 삭제></u>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u>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u><단서 삭제></u>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③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을-----.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 ----- ----- -----전부 를-----.	④ ----- ----- ----- -----전부 를-----.	④ ----- ----- ----- -----전부 를-----.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 ----- ----- ----- -----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 ----- ----- ----- -----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2년을----- -----.		----- ----- ----- ----- -----2년을-----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하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 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에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2. ----- ----- ----- ----- ----- ----- ----- ----- ----- ----- ----- ----- -----.	2. ----- ----- ----- ----- ----- ----- ----- ----- ----- ----- ----- ----- -----.	2. ----- ----- ----- ----- ----- -----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③ (생략)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

현	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액 감액지급 폐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다.

현	행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이수진의원안	김예지의원안
		개정) 고용보험 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 다. 제55조의2제2항 중 “100분의 2 5”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군복무·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가입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군복무크레딧(제18조), 출산크레딧(제19조) 및 실업크레딧(제19조의2) 등 총 3종의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법」 제18조4)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⁵⁾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 대하여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6)에 따른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 4)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5)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후략)
- 6)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소득월액'(이하 "A값"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며,⁷⁾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함.

- (출산크레딧) 「국민연금법」 제19조⁸⁾에 따른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⁹⁾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추가 산입하되, 최대 50개월까지만 산입되며,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 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8)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9)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전략)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겨웅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고,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으나, 그 부담 비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30%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는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실업크레딧) 2015년 1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¹⁰⁾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¹¹⁾ 이하인 구직급여¹²⁾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75%¹³⁾를 국가로부

- 10)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2. 소득기준: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 12)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터 지원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받는 제도임.

(2)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관련

□ 각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김선민의원안(제952호)과 같이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현행 ‘A값의 50%’에서 ‘A값’으로 상향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되고, 이로 인하여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며,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타 직역연금에서의 군복무 가입기간 산입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개인 부

1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담으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서만 개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A값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산입하여주는 등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려는 김예지의원안의 경우 2064년부터 2073년까지 10년간 약 8조 3,168억원(2023년 불변가격 기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김예지의원 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64년	2065년	2066년	2067년	2068년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617	3,234	4,813	6,273	7,687	83,168	8,317
구분	2069년	2070년	2071년	2072년	2073년		
추가재정소요	9,105	10,485	11,868	13,295	14,790		

주: 국회예산정책처는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과 같이 ‘연금급여 수급 시’로 유지하는 김예지의원안에 대해서는 2025년 기준 21세인 가입자가 60세(조기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에 도달하는 2064년부터 2073년까지 10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상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현행 ‘A값의 50%’에서 ‘A값’으로 상향하고, 대체복무의 경우에도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하려는 김선민

의원안(제952호)에 대해서는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7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며, 그 규모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약 3조 403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김선민의원안(제952호)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	-	4,668	12,885	12,851	30,403	6,0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대체복무에 대한 군복무크레딧 적용 관련

- 김선민의원안(제952호)과 이수진의원안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으로서 복무한 경우에도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구 「병역법」 제5조가 병역의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¹⁴⁾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병역법」 제5조를 개정하여 ‘대체역’을 병역의 종류에 추가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그런데, 이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임용 전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14)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등 전원재판부 결정.

복무한 기간도 각각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지만,¹⁵⁾ 국민연금(가입기간)과 군인연금(복무기간)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은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군인연금은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이므로,¹⁶⁾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¹⁷⁾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 현역(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으로의 전환복무 포함)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기간과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한하여서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바,¹⁸⁾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충역

15)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 ⑬ (생략)

16)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 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대체역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한다면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충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반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보충역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었으므로, 대체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타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체역 복무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충역에 대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과 기타 직역연금의 보충역·대체역 복무기간 추가산입 여부 현황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추가산입	추가산입
	기타 ^주	불산입	
대체역		불산입	

주: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 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4)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관련

- 각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김선민의원안(제952호)은 1자녀당 12개월씩을, 이수진의원안은 1자녀당 24개월씩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서영석의원안은 1자녀당 24개월 이상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명) 이후로 매년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그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각 개정안은 실질적인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남인순의원과 성일종의원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호 및 제38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현행법에 따른

상한(50개월)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2.6%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5)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 조정 관련

- 서영석의원안·김선민의원안(제952호)·이수진의원안은 군복무크레딧 또는 출산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에서 ‘군복무 완료 시’ 또는 ‘출산(인지 및 입양 포함) 시’로 각각 앞당기려는 것으로,

출산 시 또는 군복무 완료 시에 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체감할 수 있어 군복무크레딧 또는 출산크레딧 대상자의 보상 체감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은 모두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아직 군복무크레딧 또는 출산크레딧을 적용받는 수급권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가입자가 수급권자로 본격 전환되기 시작하는 미래에는 상당한 재

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이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 시점도 함께 앞당겨지게 되어 단기간 내 증대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면서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려는 서영석의원안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85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서영석의원안 중 ‘군복무크레딧’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추계 대상 법률안	주요 내용	추계결과						
			'26	'27	'28	'29	'30	계	평균
군복무 크레딧	서영석의원안	○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산입 ○ 적용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김	- 19)	2,297	6,399	6,381	4,183	19,259	3,8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을 인정하면서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김선민의원안(제952호)과 이수진의원안에 대해서는,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12개월인 김선민의원안(제952호)의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7,87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19)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영석의원안의 경우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7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하였음.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24개월인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1조 4,16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김선민의원안(제952호)·이수진의원안 중 ‘출산크레딧’ 관련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추계 대상 법률안	주요 내용	추계결과						
			'25	'26	'27	'28	'29	계	평균
출산 크레딧	김선민의원안 (제952호)	○ 추가산입 가입기간 상한 폐지 ○ 적용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김 ○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u>12개월씩</u> 추가산입 인정	6,811	7,166	7,797	8,460	9,118	39,352	7,870
	이수진의원안	○ 추가산입 가입기간 상한 폐지 ○ 적용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김 ○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u>24개월씩</u> 추가산입 인정	6,811	14,336	15,227	16,560	17,894	70,828	14,1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각각 ‘군복무 완료 시’ 및 ‘출산 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8.0%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며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6) 출산크레딧 및 실업크레딧의 비용 부담 주체 관련

- 현재 군복무크레딧 적용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일반회계에서 지원)가 부담하는 데 반하여,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는 일반회계(30%)와 국민연금기금(70%)이 분담하고 있고,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각 25%)과 함께 가입자 본인 부담금(25%)을 재원으로 하여 적용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 적용에 따른 비용 전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서영석의원안·김선민의원안(제952호)·이수진의원안),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50%씩을 분담하도록 하되,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서영석의원안·이수진의원안)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은 각각 출산장려와 실업에 따른 연금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국가정책 목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비용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기여에 따른 수급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출산·실업크레딧 적용에 따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가입자 간 부담의 전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여

지도 있음.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현행 30%인 일반회계 부담률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8.0%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며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 다만 현행법에 따른 출산크레딧 제도와 일반회계 부담률(30%)을 유지하더라도 2045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약 5,100억원의 일반회계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추계가 제시된바,²⁰⁾

일반회계 부담률을 현행 30%보다 높이면서 각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인정하는 등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회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재정소요가 보다 커질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으로 연평균 약 1조 1,249억원을 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실업크레딧에 대한 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없애게 된다면 그간 가

20)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5호, 2023. 12.

입자 본인이 부담하여온 만큼(연평균 약 375억원)이 국가(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 최근 4년간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결산	'21결산	'22결산	'23결산	평균
지원대상	574,857	534,536	487,057	497,587	523,509
일반회계 (1232-351)	27,712	32,292	56,181	32,228	37,103
국민연금기금 (7432-441)	28,496	32,949	58,016	34,734	38,549
고용보험기금 (1293-350)	27,433	32,013	55,918	31,967	36,833
합계	83,641	97,254	170,115	98,929	112,485

자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한편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실업크레딧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²²⁾과 함께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제2항²³⁾에도 규정되어 있는바,

서영석의원안 및 이수진의원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제2항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임.

21)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추가 산입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서영석의원안과 이수진의원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1년 이상 실업크레딧을 적용받을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와 그 기간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제한되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

22)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3) 「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군복무·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인 가입기간 확대를 위하여 크레딧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시점과 일반회계 부담률은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실업크레딧의 인정범위 확대 및 재원별 적정 부담률에 대하여서도 관계부처(실업크레딧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예산은 고용노동부 소관임)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 기획재정부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복무크레딧뿐 아니라 병봉급 인상²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에 대한 적정 급여수준은 군복무크레딧과 같은 개별 제도의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을 토대로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 정도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고,

24) 병 월급(병장 기준): 17만원('15) → 41만원('18) → 130만원('23) → 165만원('24) → 205만원('25안)

-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크레딧 지원 확대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 신중검토

-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확대는 제도 목적, 보험 기여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현행법에 따라 실업크레딧 지출의 25%를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고려 시 고갈 상황(실적립금 △3.9조원)이므로 실업크레딧 비용 부담률은 제도의 취지, 보험 기여의 원리, 각 기금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감액 완화 또는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24년 기준 298만 9천원)을 초과하는 소득(이하 “초과소득월액”)을 얻게 되는 경우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최대 50%)하고 있는데,

박희승의원안은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만 감액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서영석의원안은 우선 노령연금액의 3분의 1까지만 감액할 수 있도록 상한을 하향한 다음 202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김선민의원안(제1013호)은 동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박희승의원안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1013호)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 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 ----- ----- ----- ----- ----- ----- ----- ----- ----- ----- ----- ----- -----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 ----- ----- ----- ----- ----- ----- ----- ----- ----- ----- ----- ----- -----	<삭 제>

현행	박희승의원안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1013호)
제3항에 따른 노 령연금액(부양가 족연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 을 뺀 금액을 지 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 령연금액의 2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노 령연금액에서 다 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부양가 족연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 ----- ----- -----.	----- ----- ----- ----- ----- ----- ----- ----- ----- ----- -----3분의 1----- -----.	
1. 초과소득월액(노 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 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100만원 미만 인 사람: 초과소득 월액의 1천분의 50	<삭 제>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초과소득월액이 1 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사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 의 100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3. 초과소득월액이 2 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사람: 15 만원 + (초과소득월 액 - 200만원) × 1 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 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사람: 30 만원 + (초과소득월 액 - 300만원) × 1 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 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			

현행	박희승의원안	서영석의원안	김전민의원안 (제1013호)
$\frac{\text{월액} - 400\text{만원}}{1\text{천분의 } 250} \times$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각 호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63조의2제1호: 2025년 6월 30일 - 제63조의2제2호: 2025년 12월 31일 - 제63조의2제3호: 2026년 6월 30일 - 제63조의2제4호: 2026년 12월 31일 - 제63조의2제5호: 2027년 6월 30일 제6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지급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지급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노령연금액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초과 소득월액 규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로,²⁵⁾

현행법상 노령연금 수급연령(2024년 기준 63세)²⁶⁾이 된 때부터 5년간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초과소득월액 규모에 따라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액의 5%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액의 10% △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액의 15% △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액의 20% △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액의 25%를 각각 감액하도록 하는 누진제를 적용하되, 감액되는 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5)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26)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박희승의원안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서영석의원안은 우선 노령연금액의 3분의 1까지만 감액할 수 있도록 상한을 하향한 다음 202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김선민의원안(제1013호)은 동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려는 것임.

<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초과소득월액	현행 (감액률)	박희승의원안	서영석의원안	김선민의원안 (제1013호)
100만원 미만	5%	< 구간 폐지 >	'25년 6월 폐지	제도 폐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현행과 같음)	'25년 12월 폐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26년 6월 폐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		'26년 12월 폐지	
400만원 이상	25%		'27년 6월 폐지	
감액 상한	노령연금액의 1/2	(현행과 같음)	노령연금액의 1/3	

□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거나 제도를 폐지하여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제고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60대가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등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공적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제도는 2000년 이전까

지는 해당 제도가 없는 국가가 8개국이었으나, 미국·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 등 4개 국가가 감액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감액제도가 없는 국가가 총 12개국으로 늘어났음.

< OECD 주요국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

구 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감액제도가 없는 국가	(8개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12개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u>미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u>
감액제도가 있는 국가	(12개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u>미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u>	(8개국) 이탈리아, 일본,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2017), 「노령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연구(김혜진)」, p.122, 일부 내용 재구성(OECD 회원국 증가를 고려한 수정)

□ 다만, 초과소득월액 고액 구간에 대한 제도 폐지는 주로 고소득자의 수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근로 의향에 미치는 효과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²⁷⁾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서영석의원안) 또는 일시(김선민의원안(제1013호))에 폐지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2,734억원~4,632억원의 추가재정소

2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2019),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운영방안 연구(김혜진, 류재린, 유현경)」
 - “(감액제도로 근로의욕이 감소된 경험) 근로의욕이 다소 감소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이것은 노령연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일을 그만둘 경우 생계유지 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감액되는 금액에 비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감액제도가 근로 의향에 주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11쪽)”
 김혜진·류재린(202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사회경제평론(KCI등재)」
 - “분석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활동,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폐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초록).”

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연평균
단계적 폐지 (서영석의원안)	79	1,850	3,545	3,890	4,306	13,670	2,734
일시 폐지 (김선민의원안)	3,375	3,911	4,533	5,253	6,088	23,160	4,6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근로유인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연금수급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²⁸⁾
- 동 제도 폐지 시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 검토

- 기획재정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가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지원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여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28)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023)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감액제도 폐지에 따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병행하기로 하였음.